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874
----------	-------

발의연월일 : 2026. 5. 7.

발 의 자 : 이기현·최민희·김준형
장종태·박해철·장철민
박은정·한민수·김교홍
문진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부금품 모집자들은 영상, 신문·잡지 또는 현장 모집 등을 통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기부금품 모집자들이 기부금품 모집을 위한 방송·광고 등을 하면서 특정 분쟁지역이나 빈곤 국가에 거주하는 특정 인종 또는 빈곤 상태에 놓인 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다문화가족 등의 사회적 약자를 과장되거나 왜곡된 방식으로 연출함으로써 특정 지역이나 인종 또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정관념과 차별적 인식을 조장할 우려가 있음.

이에 기부금품 모집자가 모집 활동을 하는 경우 기부 대상자의 인권과 존엄성을 보호하도록 하는 책무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건전한 기부금품 모집 활동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3조의3 신설 등).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을 제3조의4로 하고, 제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3(모집자의 책무) 모집자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지켜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내용으로 모집하지 아니할 것
2. 특정 국가나 지역, 인종 등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3. 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다문화가족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침해하지 아니할 것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u>제3조의3(모집자의 책무) 모집자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지켜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내용으로 모집하지 아니할 것</u> <u>2. 특정 국가나 지역, 인종 등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u> <u>3. 아동 · 청소년 · 노인 · 여성 · 장애인 ·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침해하지 아니할 것</u>
<p><u>제3조의3(기부의 날 · 기부주간 및 포상 등) (생략)</u></p>	<p><u>제3조의4(기부의 날 · 기부주간 및 포상 등) (현행 제3조의3과 같음)</u></p>